

모 집 공 고 문

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,
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상임감사로 모십니다.

□ **공모직위 및 인원 : 상임감사 1명**

□ **임기 : 2년** (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)

□ **자격요건**

-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유한 분
-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
- 공항건설 분야의 높은 업무이해를 갖추신 분
-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업무추진 능력을 갖추신 분
- 공공기관 운영 및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신 분
- 기타 공단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4조 등 관련 법령 및 공단 내규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분

□ **제출서류**

- 이력서 1부(컬러사진 포함)
- 자기소개서(A4용지 5매내외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A4용지 5매내외) 1부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- 결격사유 및 이해충돌방지 여부 확인 서약서 1부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
- 지원서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(대학 이상 학력, 경력, 자격증, 포상, 논문 등)
※ 선임과정 중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음

□ **제출방법**

- 제출기간 : '26.10.20.(화)~10.30.(금) 18시까지
- 제출방법 : 등기우편, 전자우편 중 택1
※ 접수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, 방문접수, FAX발송, 일반우편 접수 불가
- 제 출 처
· 등기우편 : (우46717)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2로 127(명지동, 반도아이비플래닛)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(A-2동 6층 기획조정처)
· 전자우편 : recruit@g-airport.or.kr
※ 전자우편 제출 시 서명 후 PDF방식으로 스캔하여 제출하고, 반드시 유선으로
제출 여부 확인

□ **심사방법**

- 서류심사 :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면접대상자 결정
- 면접심사('26.11.24.(화)):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후보자 결정
- 심사기준 등 : 공단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별첨자료 참조

□ **기 타**

-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반환청구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응모자가 공단 내규상 일정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(☎051-601-3741, 37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0일

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

□ 심사 기준

구 분	감 사
기본역량	□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○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 ○ 경영의 개선점 발굴 및 발전적 정책제시 능력 ○ 장기적 경영여건 분석 및 대비 능력 □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○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렴성·준법성·도덕성 실천 능력 ○ 공익실천에 대한 책임감과 권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○ 건전한 윤리의식 및 청렴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태도 □ 공항건설 분야의 업무 이해도 ○ 공항건설 및 항공교통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 ○ 정부정책 및 공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
고유역량	□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업무추진 능력 ○ 공공기관의 감사로서 공정 타당한 업무처리 능력 ○ 청렴도 향상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능력 ○ 엄정한 감사를 통한 투명경영 및 공단발전 유도 능력 □ 공공기관 운영 및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○ 국민경제 및 공공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비전제시 능력 ○ 공공사업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경험

1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

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